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2261      |
| 의 퇴 인 | 이수진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 08.23. |
| 추계번호  | 24D2315      |

#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<br>(조제목)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0조제2항(보상금등의 신청) |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법 시행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미첨부근거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조제2항(보상금등의 신청)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사유

-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연장(안 제10조제2항)
  - 개정안은 보상금등<sup>1)</sup>의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연장하여 그동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추자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   -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, 1인당 보상금액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평균 1억 8,000만원, 교육훈련자의 경우 평균 약 1억원 수준임
-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,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접수는 2005년 2월부터 시작되어 6차에 걸쳐 접수를 받아 2019년 11월에 종료되었음

1) 보상금, 특별공로금, 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의미함

[표 1]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접수기간

| 구 분 | 접수시기                         | 총계    | 신규신청  | 재신청인원 | 접수기간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1차  | 2005. 2. 1. ~ 2005. 8. 1.    | 5,638 | 5,638 | -     | 6    |
| 2차  | 2006.11. 1. ~ 2007.10.31.    | 1,262 | 1,261 | 1     | 12   |
| 3차  | 2009. 4. 1. ~ 2011.10.31.    | 1,650 | 1,632 | 18    | 31   |
| 4차  | 2014. 5. 9. ~ 2014.11.10.    | 463   | 395   | 68    | 6    |
| 5차  | 2016. 1.19. ~ 2016. 4.19.    | 1,293 | 247   | 1,046 | 3    |
| 6차  | 2019. 5. 24. ~ 2019. 11. 25. | 738   | 513   | 225   | 6    |

자료: 국방부

- 2020~2024년 보상인원은 287명이며, 지급금액은 306.9억원임

[표 2]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인원 및 보상금등의 지급 현황

(단위: 명, 억원)

| 구 분 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합계  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보상인원 | 92   | 161  | 34   | 0    | 0    | 287   |
| 지급금액 | 122  | 159  | 22.4 | 2.3  | 1.2  | 306.9 |

자료: 국방부

- 국방부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은 최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신청을 하지 않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과 미신청자 신청에 따른 보상금 등 총 2,707억 3,000만원으로 추정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추정

(단위: 명, 억원)

|           | 인원    | 단가   | 지급비율 | 보상금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
| 미신청유족 보상금 | 974   | 0.27 |      | 265.6   |
| 미신청자      | 2,654 | 1.15 | 0.8  | 2,441.7 |
| 합계        | 3,628 | -    | -    | 2,707.3 |

주: 미신청자 지급비율은 형제·자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80%를 적용함

자료: 국방부

- 미신청유족 보상금은 유족 중 일부가 보상금을 신청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(이하 “미신청유족”이라 함) 97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265.6억원임
- 또한, 국방부에 따르면, 법률안 제정 후 보상금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 5,548명에 대해 보상지원단의 자체 조사결과, 북한연고자, 주소지 등 대상 불특정자 1,775명을 제외한 3,773명이 확인되었으며, 이 중 2,654명에

대한 자료 확인 결과 보상대상자인 것으로 추정됨

- 이에 더하여, 보상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가 연간 4.62억원(2020년 연간 운영비 기준) 소요될 것으로 추정
  - 위원회 안건심사수수료, 재판소송비, 추모 행사비 등 2.31억원, 근로자(2명) 급여, 퇴직금 등 1.15억원, 장비 유지비, 지원단 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 등 1.16억원임
- 다만, 국방부가 판단한 보상대상자 2,654명 중 개정안에 따른 신청기간 5년 내에 신청인원 및 재신청 인원 비율, 신청 및 재신청인원 중 인용비율, 인용인원 및 미신청 유족 중에 보상금등을 실제 수령할 인원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동 개정안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Ⅳ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수연 | 김안나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|
| 전수연 | 02-6788-4667 | syjeon@assembly.go.kr |